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

김남규** · 박다윤*** · 노희주**** · 김도선***** · 김연수*****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톱킹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의 개정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의 법제 검토와 국내 입법진행 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방향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잠정조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운용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장치 관리 및 탈부착은 경찰이, 부착자 위치추적 감시는 법무부가 각각 수행한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인적 교류를 제안한다. 셋째,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되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다른 잠정조치에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논의와 제도도입의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한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87>.

❖ 주제어 : 스톱킹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피해자보호, 기본권, 전자감독제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7589)

** 주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수료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융합보안학과 교수(kimys36@dongguk.edu)

I. 서론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법안 통과까지 무려 22년이나 걸린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여정이 험난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을 단순 ‘구애’ 행위로 보았던 낮은 인식 수준은 스토킹의 개념 정의 자체를 어렵게 했다. 또, 신체적 폭력행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경범죄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했던 형사정책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¹⁾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2021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이나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2022)가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제재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26.9%에 불과했고, 그 이유로 ‘현재의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법 시행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입법적 미비점 보완 논의가 활발하다.²⁾ 대표적으로 법의 실효성 강화 내지 미비점 보완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온라인 스토킹 규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제도 도입,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다. 이들 개정안 내용은 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여러 법률안 가운데, 법무부의 개정법률안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 349건 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었고(법제처, 2022), 온라인 실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법안 도입에 대해 95.2%가 찬성

1)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제1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의 주무부처가 경찰청(생활질서과),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보다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다 강조한 것이었다.

2) 2021.3.24.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2023.4.30. 현재 개정안 43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38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5.6.검색).

하는 등(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감독제도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은 인정하나, 지나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혐의 수준에 불과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존 위치추적 전자감독 부착제도가 형선고 이후 단계의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던 조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감독제도는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불구속 재판의 확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³⁾ 즉,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도 위치추적장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 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형벌권 내지 권력작용에 해당하는 제재수단의 확장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 국내 제도상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중앙, 대전)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제도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이후 지적되고 있는 입법적 불비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였던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와 스토킹처벌법 상의 피해자보호조치, 그리고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개별 제도의 상호보완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 해외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스토킹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의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법률안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개정논의인 점에 비추어 스토킹 범죄로 제한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만, 해외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하여 관계성 범죄

3)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당시(2007.4.27.) 이 법의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었으나, 2009.5.8. 법개정을 통해 특정범죄(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확대되었고, 2010.4.15. 살인범죄, 2012.12.18. 강도범죄 등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3.29.에는 스토킹범죄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하였고, 2023.6.21.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II. 국내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의율되던 스토킹 행위는 별도의 판단기준과 제재 규정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기관에 의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박찬걸, 2021).

다만, 신당역 살해 사건,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해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의 피해자 보호제도, 추가적인 개정법률안의 피해자 보호강화 논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등을 각각 살펴보았다.

1.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그 밖에 성격이나 유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김혜영, 2022).

잠정조치는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보호조치이며,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잠정조치

의 유형은 4가지이며,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그리고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특히 잠정조치는 다른 피해자 보호조치와는 달리 스톱킹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각각의 잠정조치는 병과가 가능하며(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혹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표 1〉 스톱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대상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격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신고 시 스톱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1. 스톱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2.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수사 3.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4. 상담소, 보호시설로의 인도	1.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서면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톱킹 신고에 대한 조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나. 잠정조치의 문제점과 비판적 검토

현행 스톱킹처벌법은 초동조치 단계부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피해자 보호에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톱킹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스톱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미흡함을 보여준 사건 중 하나이다. 당시 피해자를 스톱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시면, 2022).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잠정조치는 약 6,085건이다(경찰청, 2022).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최종결정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위반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위반율은 508건(8.3%)에 달하며, 잠정조치에 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이 경미한 긴급응급조치는 421건(12.4%)이다.

〈표 2〉 잠정조치 시행 현황

구분	경찰신청 (건)	최종결정		위반	
		건수	결정율	건수	위반율
'21년	1,059	869	82.1	58	6.7
'22.10월	6,061	5,216	86.1	450	8.6
계	7,120	6,085	85.5	508	8.3

* 경찰청 내부자료 재구성

대부분의 스톱킹 피해자들은 스톱킹 행위자와의 신속한 분리를 원하고 있다. 스톱킹의 특성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대방을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곽영길 외, 2011). 실제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톱킹 피해자들은 ‘스톱킹 행위자로부터의 보호(접근금지 등)’(67.8%)를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반면, 잠정조치를 비롯한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스톱킹 행위자의 의지와 협조에 준수 여부를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한민경, 2022). 이처럼 피해자의 욕구와 대비되는 현행 잠정조치 시행 현황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2. 스톱킹처벌법 개정법률안 현황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스톱킹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사건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는 스톱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톱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법무부, 2022). 입법예고에 따른 스톱킹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 번째로, 스톱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이다.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는 경우, 2차 스톱킹 혹은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김혜영, 2022).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톱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스톱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 단계, 주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의 제4장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스톱킹 처벌 규정의 신설이 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스톱킹 행위의 유형은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톱킹하는 때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보호제도 도입,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영 현황

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국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제정, 2008년 9월 53명의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자장치부착법의 명칭·대상 변경 등 주요 연혁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단계는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시행 초기에는 형 집행 종료 후의 성폭력 사범만이 대상이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사범(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살인죄, 강도죄)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이다. 이후, 죄종과 관계없이 가석방과 가중료, 가출소, 보석,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대상자들까지 제도의 시행 단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정문과 후문을 모두 아우르게 되었으며 단기구금의 대체 형벌로도 논의되고 있다(조운오, 2022).

<표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 연혁

법률제명	년도	주요 내용	부착 기간	운영 주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8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	5년 [∞] 10년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 관제 센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9	미성년자 유괴범죄 추가		
	2010	살인범죄 추가, 3년 이내 성폭력 범죄자 소급적용 추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강도범죄 추가		
	2019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사범, 고위험 대상자에게 1:1 감독 시행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전자장치 부착 조건의 보석과 가석방 대상자가 기존 4대 특정 사범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2021	위반사항에 대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2022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 근거 규정 마련		

출처: 법무부 누리집의 전자감독제도 소개글을 토대로 재구성

나. 스톱킹 범죄자 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도입

형사사법망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가출소/가석방/집행유예에 이어 확정 판결 전의 단계에서까지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선고 후 접근금지명령이나 처벌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까닭에 피해자 안전조치, 특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안전조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의 개발, 시행 중에 있다(김연수·이재영, 2020). 이는 경찰의 신변 보호 서비스로 사용 중인 스마트워치 기술과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위치추적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또는 악세서리 형태의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사후대응적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피해자 생활패턴’을 안심존으로 설정하여 스톱킹 행위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 시 보다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가능하다.

4.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 및 현황

현재 우리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본인 혹은, 경찰이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

해자 안전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김광현, 2022). 개별 사건의 정확한 위험도 파악을 위하여 현재 경찰은 자체적 산출 위험도 등급에 따른 맞춤형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위험도 등급별 맞춤형 안전조치 내용

위험도	등급별 필수 고려 항목	공통조치
매우 높음	- 주거 이전(이전비 지원, 안전숙소 ‘10일 이상’, 보호시설 등) - CCTV 설치,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피해자 권고, 피해자 행동요령 및 협력의 무 강조
높음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출처: 경찰청. (2022).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세미나자료 재구성.

나. 경찰청 피해자 안전조치 내 스마트워치 활용 관련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안전조치 역시 사후대응적이며 사건 접수 후 스토킹 행위자 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가 현재 유일하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이전까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가 불구속 상태인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성 판단 결과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경우의 필수적 고려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다. 또, 피해자의 권고문을 기반으로 피해자 개별상황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일선 실무에서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김광현, 2022). 실제로 스마트워치 지급현황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8,945대지만 보유현황은 3,700대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6,30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기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현재의 스마트워치만으로는 현장의 수요와 공백을 모두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해외의 법제도 검토

해외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특정 범죄에 초점을 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시행하기보다 범죄의 성격,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즉, 스톱킹 범죄에 한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되기보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과 같이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해외 법제도 검토 역시 스톱킹 범죄로 한정하지 않고, 관계성 범죄 전반을 포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점에서 해외의 제도운영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영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영국의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포함)와 관련하여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근거 법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인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가 있다. 이 법은 클레어법(Clare’s Law)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클레어라는 여성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다. 이 법률은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파트너의 폭력행위 전과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스토킹 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있다. 이는 스톱킹 관련 법률로써, 이 법률에 의해 스톱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성격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이 된다.

경찰단계가 아닌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로는 “가정폭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DVPO)”가 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행위

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법원에서 발부된 보호명령서를 통해 가해자에게 GPS기반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법률은 2014년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를 시작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의 특정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제도 운영실태

영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운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토킹 및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은 초동조치의 일환으로 임시명령서를 발부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법원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명령서를 발부하며, 위치추적 장치는 경찰이 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관계성 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인 “Domestic Abuse Investigation and Safe Guarding Unit(DAISU)”를 조직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평균적으로 14일에서 28일간 지속되며 이 기간에 전자장치 부착자는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을뿐더러 몇 가지의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경고, 벌금, 구속, 기간연장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 호주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호주에서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의 범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75년 ‘연방가족법(Commonwealth Family Act 1975)’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거나 강압, 공포심을 주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의 된다. 이후 2007년 ‘가정 및 가족 폭력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ct 2007)’에 따르면 가해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및 이전 파트너, 전 파트너의 새로운 파트너, 각 원주민 문화에

따라 친족의 일부인 모든 사람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두고 있다. 또한 ‘가정 및 개인폭력 법(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에 따라 스톱킹 행위⁴⁾가 법제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톱킹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Domestic Crime)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호주는 ‘가정폭력(가족보호)법(The Domestic Violence(Family Protection) Act 2012)’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사안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2017년 ‘교정보호법(Corrective Service Act 2006)’의 개정안에 따라 가석방된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위치추적 단일 목적을 지니고 활용되는 것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감시감독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2018년 ‘보석법(Bail Act 1980)’의 개정에 따라 보석 조건부 석방되는 인원에게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종합해보자면, 보석 및 가석방 대상의 모든 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으로, 이는 곧 보석 및 가석방이 된 호주의 가정폭력 사범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도 운영실태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는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호주의 ‘가정폭력(가족보호)법(The Domestic Violence(Family Protection) Act 2012)’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경찰보호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후 가해자는 즉시 행동을 수정해야하며, 24시간동안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일정 거리 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보호통지서를 발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최대 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에 판사에게 보

4) 스톱킹은 한 사람이 계속된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 타인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에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고통, 통제 상실, 두려움 또는 괴롭힘을 야기하며 최소 두 번 이상 발생함.

호명령신청을 하게 된다. 구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계속 구금할 수 있다(Queensland Police Service, 2023).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보석에 준하는 자가 위치추적 장치의 대상이되며 이들의 모니터링 주체는 경찰이 된다. 위치추적 장치의 장착 제거는 QPS 감시소(QPS Watch House)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QPS 직원들은 장치에 대한 장착, 활성화, 배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감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시 즉각적으로 경찰에 알리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경찰들은 위반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Queensland Police Service, 2023).

3. 미국의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가. 관련 법률

미국 가정폭력 법률은 1882년 미국 매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92년까지 미국의 51개 주 모두 가정폭력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US Code)에 따르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피해자의 현재 또는 전 배우자, 동거하는 자 혹은 동거했던 자가 저지를 폭력 중 경범죄, 중범죄를 포함한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가정폭력을 ‘한 파트너가 다른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학대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스토킹을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23). NIJ에서 정의한 스토킹은 ‘스토키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 혹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스토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스토킹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 내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일부 주 정부 별 가정폭력 정의 내 스토킹 행위

주(州) 정부	정의
캘리포니아	가정 폭력은 가해자가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을 지니고 타인을 따라다니거나(Following)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
플로리다	가정폭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Following) 괴롭히는 것 을 의미. 만약 스토킹 행위 중 확실한 위협이 포함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음.
텍사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두려워 하는 행동을 두 번이상 수행 하여 피해자가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

출처: FindLaw(2021). <https://www.findlaw.com/family/domestic-violence/stalking-and-domestic-violence.html>

1994년 워싱턴 주에서는 다른 주 보다 발 빠르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가정 폭력 및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조건은 주 별로 상이하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교정의 정문정책 일환으로 징역형 대신 위치추적 장치를 부과하는 주도 있으며, 일종의 후문정책으로 가석방 조건 하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허민숙, 2021).

〈표 6〉 주 정부 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준

구분	주(州) 정부
전자감독 명령 및 피해자보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워싱턴
명령 위반	아칸소, 코네티컷, 켄터키,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테네시, 위스콘신
보석 및 석방 조건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노스 다코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출처: 허민숙(2021), ‘접근금지명령 이행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GPS 위치추적 도입 논의를 위한 시론’에서 재편집

나. 제도 운영실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 포함 관계성 범죄 가해자 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은 주마다 조건이 서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공통적으로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GPS 수신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가해자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할

징후가 발견될 시 경보가 울리도록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있다(허민숙, 2021).

제도의 효과성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 수단으로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한 구역의 접근을 금지하는 전자장치부착제도는 피해자와 부착자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rez, Edna, et al., 2012). 2012년 미국 법무부(Departmet of Just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자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정의 정문 정책 일환으로 유죄 선고 이전에 석방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부과받는 것은 실제 처벌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비용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IV.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국내 도입시 쟁점⁵⁾

1. 기본권침해 가능성

가. 도입 반대 입장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재판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생활 침해⁶⁾나 무죄추정의 원칙⁷⁾’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그 동안 위치추적

5) 본 내용은 제400회, 403회, 404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주제와 맞게 편집하여 활용하였다.

6)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함

7)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 가석방과 같은 구속과 관련해 ‘조건부 석방’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왔다”며 판결 전/구속 전 단계에 스토킹행위만으로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구속심사 과정에 일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스토킹 외에 보복성 범죄, 원한 범죄에 대한 예방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의 4호 처분인 유치처분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단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시 접근금지와 병과해서 상당한 활용이 예상되고, 부착신청이 폭주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형 선고 단계도 아니고 구속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를 발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 전가되는 것에 부담이 있음을 피력하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나. 도입 찬성 입장

한편 법무부에서는 이 제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한 ‘조건부 석방제도’와는 전혀 다른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긴급하게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부착여부를 판단하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는 없음을 반론하였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조건부 석방제도와 결부해서 논의될 부분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은 스토킹범죄는 집착 범죄의 한 유형임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및 행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확실하게 격리시키고 접근을 막을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법률 제9조 1항의 잠정조치 유형(1. 서면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중 유치장 감치보다 기본권 침해가 낮으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극히 적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제한되는 점에서 잠정조치로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 도입 반대 입장의 재반박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심문절차를 통해 부착명령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혐의단계고,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과 연계된 혹은 구속과 유사한 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하기 전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소한 법원에서의 심문 절차를 한 후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부착은 모두 판결선고와 동시에 혹은 구속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심문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심문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소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보다 더 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경우에도 심문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여 유치 처분에 대한 심문절차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도입 찬성 입장의 반론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신변구속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 심문단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다. 적어도 법원에서는 심문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객관적 수사 및 혐의 관련 서류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심문절차 도입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심문을 위한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잠정조치

를 위해 가해자를 심문한다면 결국은 잠정조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며 잠정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지 이를 심문 절차로 보완하고자 한다며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사라질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 소결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현행 피해자 보호체계의 빈틈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행위자의 접근금지명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범죄피해사실이 다수 보도되며(서울경제, 2023) 가해자의 위치추적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톱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스톱킹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수사기관이 스톱킹 행위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김재경, 2022).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일차적으로 경찰의 판단하에 잠정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신청 또는 사후 청구하는데, 추후 행위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행위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당위성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판례 *Griffin v. Wisconsin*, 483 U.S. 868(1987)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⁸⁾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 도출과 합의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용 방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쟁이 있다.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의는 ① 제도의 적용단계, ② 제도 운용 주체, ③ 제도의 실

8) 미 연방대법원은 보호관찰의 목적 하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보았음

효성 확보방안, ④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의견차이 등이 있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도 존재한다.

가. 제도의 적용단계

먼저 제도의 적용단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긴급응급조치 단계와 잠정조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 중에서 해당 제도가 긴급응급조치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소병철⁹⁾, 황보승희¹⁰⁾)과 잠정조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김영주¹¹⁾, 박광온¹²⁾, 법무부¹³⁾, 전주혜¹⁴⁾, 정부¹⁵⁾), 그리고 두 단계 모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김미애¹⁶⁾, 송석준¹⁷⁾, 임호선¹⁸⁾)이 서로 대치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제시한 잠정조치에 한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운용방안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긴급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이유로는 ① 긴급응급조치는 긴급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톱킹행위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선조치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② 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은 과도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로 위치추

9)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08. (2022.09.23.)

10)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60. (2022.12.27.)

11)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06. (2022.09.30.)

12)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80. (2022.09.28.)

13) 법무부. (2022.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법무부 공고 제2022-337호.

14)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64. (2022.06.15.)

15) 정부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039. (2023.02.15.)

16)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40. (2022.10.05.)

17)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97. (2022.09.16.)

18)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66. (2022.09.22.)

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정부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비쳤다.¹⁹⁾

나. 제도 운용 주체

제도 운용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제도 운용의 주체에 관한 의견이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의 집행 담당자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위반 시 벌칙 등의 세부적인 법안 정비 및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련 의견으로는 정부안, 법무부 입법예고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주혜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제도 운용의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제시하였고,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보호직 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톱킹 행위자가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접근제한구역에 도달했을 때 수신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결정을 받은 스톱킹 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톱킹 행위자가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해당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출동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개정안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며,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19) 2023.6.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톱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계류중).

대응은 관할 경찰관서에서 맡는다.²⁰⁾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도운용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다. 부착기간 동안은 최소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부착토록 하는 주장이 성립하지만, 반대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인 점에서 그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톱킹 행위자 대상 적절한 부착기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2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스톱킹 행위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부착기간을 검토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현행 잠정조치가 2개월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현행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로 부착하되, 스톱킹행위의 위험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개월 내에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톱킹처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로 규정되었다.²¹⁾ 이러한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석이 없이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관련 합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또는 보다 강한 벌칙을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잠정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만약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할 경우, 부착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김재경(2022)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동효와 허영희(2022)는 스톱킹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

20) 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77, (2023.6.20.) 계류 중.

21) 법제사법위원회 장,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할 위험이 높으나 현행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이나, 잠정조치에 포함되는 조치이므로 어떤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칙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등 위반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²²⁾

라.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의 이해충돌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자의 이해충돌 역시 제도 운용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 실무자, 특히 스톱킹 행위자의 관리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청소년계 실무자와 실제 제도 운영에 결정권한을 지닌 경찰지휘부의 의견대립은 원활한 임무 수행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마찰은 결정권자와 실무자가 접촉 가능한 정보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는 부착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업무 범위와 수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무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 격차에 의한 대립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 또한 존재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자의 업무 폭증, 장비 관리 주체, 불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있다. 결정권한자는 현재 잠정조치로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인원이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조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접근금지명령과 병과할 예정인데 현재 접근금지명령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역시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착장치에 대한 관리 역시 실무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경찰서에서 진행하

22) 2023.6.21.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스톱킹처벌법 개정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및 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계류 중).

게 되는데, 다양한 사유로 장비 파손에 대한 수리 및 장치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이 실무자의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는 위치추적센터의 보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행위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양 기관 실무자 간의 강한 협력관계 수립과 함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제도운영의 주체를 선정하여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국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담팀(Domestic Abuse Investigation and Safe Guarding Unit; DAISU)의 구성인원처럼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대응인력을 구성하는 것 또한 제도운영의 주체를 선정하는 것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영주 의원안에 따르면, 현행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스토킹 행위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 1km 이내 등 일정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피해자와 경찰 등 관련자가 즉시 인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피해자 보호의 조치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다방면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최초 입법발의된 이래 사회적 합의에 도래하지 못하고 무려 22년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주요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스톱킹처벌법 상의 잠정조치(특히,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 제도를 검토한 결과, 스톱킹처벌법 상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가 적지 않다. 스톱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그 위험성에 비하여 제재수단이 미흡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최초 도입시기에 비하여 현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스톱킹처벌법 상의 피해자보호 내지 가해자 제재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스톱킹범죄와 같은 가해자-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결과가 예견되는 경우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도도입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 심층적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사법부(법원 행정처)와 행정부(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의 적용은 경찰이 판단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아닌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잠정조치에 포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 제도운영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하고, 장치의 보관과 부착과 탈착 실행은 경찰에서 하며, 스톱킹 행위자의 위치추적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여부의 감시는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담당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상호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의 협력관계 구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과 소방이 소속 인력을 상대 기관에 파견함으로써 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선 경찰(경찰서 여청수사팀 및 지역경찰)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 강화를 꾀하는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에 전담경찰관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정원감축마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보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기존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업무에 스토킹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조직개선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그 효용성만큼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형사정책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합리적 운용이 요구된다. 즉, 위치추적장치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2회 연장 가능한 수준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훼손이나 임의 분리 등 위반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시의 벌칙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법의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규정 위반의 고려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도의 실증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쌍방향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직 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내지 학원 등 특정 공간을 접근금지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해당 공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즉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지는 취지에서는 피해자 자체가 접근금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기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가 상호 연동되어 특정 간격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서구 유럽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연구는 스톱킹 처벌법 시행 이후 여전히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 내지 스톱킹 행위자 제재 수준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았다.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도입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 및 제도운영 상의 여러 쟁점들이 도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바람직한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제도도입 이후 그 효과성 검증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22). 스톱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고시면. (2022). (2022년 9월 14일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에 이른 스톱킹’ 등의 사례들에서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약 1년 만에 유명무실화 논란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스토킹 2], 사법행정, 63(12), 2-23.

곽영길, 임유석, 송상욱. (2011). 스톱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47-76.

김광현. (2022).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미애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740 (2022.10.05.).

김연수, 이재영. (2020).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수용모델 적용, 한국경찰학회보, 22(6), 113-144.

김영주 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706 (2022.09.30.).

김재경. (2022). 스톱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7), 181-198.

김혜영. (2021). 스톱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톱킹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Ewha Law Review 11., 141-161.

문화체육관광부. (2022). 스톱킹범죄자 전자감독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박광온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80 (2022.09.28.).

박찬걸. (2021). 최근 제정된 스톱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33(3),

267-290.

법무부. (2022.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법무부 공고 제2022-337호.

법무부 누리집. 전자감독제도,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최종검색
일: 2023.05.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2.10.26.).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2.20.). 제403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3.22.). 제40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84
(2023.6.20.).

_____.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2777
(2023.6.20.).

서울경제. (2023.02.24.). 경찰이 스마트워치 쫓지만 또 납치...피해자 보호 효과 있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VI2XJK8>(최종검색일: 2023.05.30.).

소병철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08,
(2022.09.23.).

송석준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397
(2022.09.16.).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23.5.6.).

임호선 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66
(2022.09.22.).

전주혜 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964
(2022.06.15.).

정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039 (2023.02.15.).

조운오. (2022). 전자감독 처분 유형별 차별화 전략 연구(단기구금형 대체 전자감독 도
입에 관한 연구 중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톱킹 신고에 대한 조치, <https://easylaw.go.kr/CSP/CnpCls>

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최종검색일: 2023.05.31.).

한동효, 허영희. (2022). 현행 스톱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30(1), 225-256.

한민경. (2022). 스톱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과 한계-잠정조치 불이행을 중심으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최종검색일: 2023.05.29.).

허민숙(2022), 접근금지명령 이행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GPS 위치추적 도입 논의를 위한 시론.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160 (2022.12.27.).

Hertfordshire Constabulary. (2021). DAISU Unit
https://tri-force.tal.net/vx/mobile-0/appcentre-herts_ext/brand-5/candidate/so/pm/6/pl/20/opp/9912-PS-1284-H-A4-DAISU-Domestic-Abuse-Investigation-and-Safeguarding-Unit-Officer-Safeguarding/en-GB

Queensland Police Station. (2023). 가정폭력 대응방법
<https://www.police.qld.gov.au/domestic-violence/do-you-use-domestic-violence>

Queensland Police Station. (2023). QPS 관련 내용.
<https://www.police.qld.gov.au/domestic-violence/do-you-use-domestic-violence> Website Police Station.

QPS Website Police Station. (2023). QPS Watch House
<https://www.police.qld.gov.au/initiatives/electronic-monitoring-gps-tracking-of-bailees/about-electronic-monitoring>

A Study on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s for Tracking the Stalker Location

Kim, Namgyu* · Park, Dayoon** · Noh, Heejoo***

Kim, Dosun**** · Kim, Yeonsoo*****

The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sanctions on perpetrators, which are pointed out as deficiencie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in October 2021.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ently revise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during the review of overseas legisl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First,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it should be included in temporary measures that require judgment by judges. Second, the subject of the system operation is three won, and the attachment order is carried out by the court, the device management and attachment are carried out by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location of the attachment.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stitutions, human exchanges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s are proposed. Third, the attachment period is up to two months, but it can be extended up to two times, but in the same way as penalties imposed on other provisional measures in the event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Master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Dongguk University(Seoul)

***** Professor,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ecurity in Dongguk University(Seoul)

of a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is considered reasonable. Finally, a reflux system for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is proposed through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two-way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 Key words: stalking crim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victim protection, basic rights,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